

#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3. 5.  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2월 15일

나. 발 의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3. 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장종연)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 상담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학교폭력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구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사업

○ 시설명칭: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 
학교폭력예방센터 포함)

○ 위 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(영등포본동) 지하1층, 지상2~3층

○ 규 모: 면적 703.36 $m^2$ , 정원 17명

○ 주요시설: 상담대기실, 심리검사실, 놀이치료실, 사무실 등

■ 주요사업 ■

구분	주요사업
청소년상담복지센터	청소년 및 부모 상담(심리검사, 놀이치료)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 사업 청소년 긴급 구조 전화 운영
청소년동반자사업	찾아가는 청소년 상담, 위기청소년 사례관리
학교폭력예방센터	학교폭력 피해자·가해자 상담 심리검사,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학교 밖 청소년(학업중단 등) 지원 (취업, 검정고시, 문화여가, 건강지원 등) 청소년자율공간(영등포본동) 운영

○ 위탁운영 개요

- 위탁기간: 3년

- 위탁사무

-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소요예산(2019년): 725,477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	운영예산	비고
계	725,477	
청소년상담복지센터	362,861	국·시·구비
청소년동반자사업	127,579	시비
학교폭력예방센터	59,447	구비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175,590	국·시·구비

○ 추진 일정

- 2019년 2월 : 구의회 동의
- 2019년 3월 : 일상감사 의뢰
- 2019년 3월 :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- 2019년 4월 :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2019년 4월 : 위탁체 결정 및 협약체결(위탁기간: 3년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○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「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은 청소년 상담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

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- 상기 시설은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(영등포본동) 지하1층, 지상2~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03,36㎡, 정원 17명인 청소년복지시설로, 청소년 및 부모 상담, 위기청소년 사례관리,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청소년 상담, 위기 청소년 관리, 학교폭력 예방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 등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요구되어 지는 바,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,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영등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85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2 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민간위탁 목적

-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(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학교폭력예방센터포함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법인(단체)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.

## 2. 민간위탁 내용

### 가. 영등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개요

- 대상시설

시설명	소재지	면적(m <sup>2</sup> )	정원
청소년상담복지센터	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(영등포본동) 지하1층, 지상2~3층	703.36	17명
학교폭력예방센터			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		

- 이용대상 : 관내 청소년 및 부모
- 주요사업

구분	주요사업
청소년상담복지센터	청소년 및 부모 상담(심리검사, 놀이치료)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 사업 청소년 긴급 구조 전화 운영
청소년동반자사업	찾아가는 청소년 상담, 위기청소년 사례관리
학교폭력예방센터	학교폭력 피해자·가해자 상담 심리검사,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학교 밖 청소년(학업중단 등) 지원 (취업, 검정고시, 문화여가, 건강지원 등) 청소년자유평간(영등포본동) 운영

## 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
- 위탁사무내용
  -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-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-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모집방법: 공개모집
- 신청자격: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(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)

## 3.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2019년 2월 : 구의회 동의
- 2019년 3월 : 일상감사 의뢰
- 2019년 3월 :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- 2019년 4월 :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2019년 4월 : 위탁체 결정 및 협약체결(위탁기간: 3년)

## 4. 민간위탁 소요 예산

구분	운영예산(천원)	비고
계	725,477	
청소년상담복지센터	362,861	국·시·구비
청소년동반자사업	127,579	시비
학교폭력예방센터	59,447	구비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175,590	국·시·구비

## 5.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청소년 전문가 및 경험을 확보한 민간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효율적 기관 운영으로 비용 절감 효과
-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복지 서비스 질 향상
- 지역사회 청소년 민간 자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

## 6. 기타사항

### 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
### 나. 참고자료: 추진 근거 법령

## 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

제42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2조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 ①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